

◆ 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	개정안		비고(개정사유)
[별표4] 안전확인대상제품		[별표4] 안전확인대상제품		국제표준의 개정에 맞춰 인증 범위 개정 - 과거 A측(입력)/B측 (출력) 구분없이 규 정되어 있던 범위가 B측 1500 V/약 400 A로 명확화되 어 국제표준 정합화 추진
사. 전기기기	22) 전기차 충전기(정격출력 이 200 kVA 이하인 것 만 해당한다)	사. 전기기기	22) 전기차 충전기(정격출력 (이 500 kVA 이하인 것 만 해당한다)	
< 신 설 >		부칙 <제000호, 2026. XX. YY.> 제1조(시행일)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		